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9~19p 빨간키	개념,공식-설명		

수정 전

(1) 과징금 처분 및 금액 등

구 분	규정내용
부과권자	시 · 도지사 : 위임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임
처분대상	제조소등의 관계인
부과요건	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
최고금액	2억 원 이하
징수절차	행정안전부령 :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
체납과징금 징수절차	「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징수
과징금 산정기준	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.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(지정수량 배수) 사용정지 일수 ※ 자가발전, 자가난방, 유사목적 : 1/2 금액
감 경	규정내용 없음

(2)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

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				
처분대상	요 건	최고처분금액	과징금액 산정기준	감경
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	영업(사용)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	2억 원 이하	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.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(지정수량 배수) 사용정지 일수 ※ 자가발전, 자가난방, 유사목적 : 1/2 금액	없음
소방시설업자		3천만 원 이하	도급(계약)금액	1/2
소방시설관리업자		3천만 원 이하	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	1/2
방염업등록업자		3천만 원 이하	전년도 연간 매출금액	1/2

수정 후

(1) 과징금 처분 및 금액 등

구 분	규정내용
부과권자	시 · 도지사 : 위임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임
처분대상	제조소등의 관계인
부과요건	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
최고금액	2억 원 이하
징수절차	행정안전부령 :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
체납과징금 징수절차	「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징수
과징금 산정기준	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.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(지정수량 배수)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※ 자가발전, 자가난방, 유사목적 : 1/2 금액
감 경	규정내용 없음

(2)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

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				
처분대상	요 건	최고처분금액	과징금액 산정기준	감경
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	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사용정지 처분을 갈음	2억 원 이하	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.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(지정수량 배수)에 따른 1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※ 자가발전, 자가난방, 유사목적 : 1/2 금액	없음
소방시설업자		3천만 원 이하	도급(계약)액	1/2
소방시설관리업자		3천만 원 이하	전년도의 연간 매출액	1/2
방염업등록업자		3천만 원 이하	전년도 연간 매출액	1/2

수정 사유	표 이론 오류

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>22~22p
(8)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</td><td>개념,공식-설명</td><td>(8)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
<table>
<tr><th>위치 · 거리</th><th>제조소등 구분</th><th>개 수</th><th>인적조건</th></tr>
<tr><td>동일구 내에</td><td>보일러, 버너 등 옥내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</td><td>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</td><td>7개 이하</td><td rowspan="2">동일인이 설치한 경우</td></tr>
<tr><td>동일구 내에 (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)</td><td>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</td><td>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</td><td>5개 이하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(제56조)이 정하는 저장소</td><td>옥외탱크저장소</td><td>30개 이하</td><td rowspan="7">동일인이 설치한 경우</td></tr>
<tr><td>옥내저장소</td><td rowspan="2">10개 이하</td></tr>
<tr><td>옥외저장소</td></tr>
<tr><td>암반탱크저장소</td><td rowspan="4">제한없음</td></tr>
<tr><td>지하탱크저장소</td></tr>
<tr><td>옥내탱크저장소</td></tr>
<tr><td>간이탱크저장소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상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.각 제조소등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
.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td><td>5개 이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급유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</td><td>제한없음</td></tr>
</table></td><td>(8)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
<table>
<tr><th>위치 · 거리</th><th>제조소등 구분</th><th>개 수</th><th>인적조건</th></tr>
<tr><td>동일구 내에</td><td>보일러, 버너 등 옥내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</td><td>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</td><td>7개 이하</td><td rowspan="2">동일인이 설치한 경우</td></tr>
<tr><td>동일구 내에 (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 이내)</td><td>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</td><td>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</td><td>5개 이하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동일구 내에 있거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(제56조)이 정하는 저장소</td><td>옥외탱크저장소</td><td>30개 이하</td><td rowspan="7">동일인이 설치한 경우</td></tr>
<tr><td>옥내저장소</td><td rowspan="3">10개 이하</td></tr>
<tr><td>옥외저장소</td></tr>
<tr><td>암반탱크저장소</td><td rowspan="4">제한없음</td></tr>
<tr><td>지하탱크저장소</td></tr>
<tr><td>옥내탱크저장소</td></tr>
<tr><td>간이탱크저장소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상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
.각 제조소등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
.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td><td>5개 이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급유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해당 선박주유취급소</td><td>제한없음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수정 사유</td><td>표 이론 오류</td></tr>
<tr><td>29~29p
(5) 정기점검의 내용 · 점검자 및 기록 · 유지 등</td><td>개념,공식-설명</td><td>(5) 정기점검의 내용 · 점검자 및 기록 · 유지 등
<table>
<tr><td>정기점검의 결과보고 (법제18조제2항)</td><td>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td></tr>
</table></td><td>(5) 정기점검의 내용 · 점검자 및 기록 · 유지 등
<table>
<tr><td>정기점검의 제출 (법제18조제2항)</td><td>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수정 사유</td><td>표 이론 오류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37~37p
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·검사 등</td><td rowspan="2">문항_삭제</td><td>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·검사 등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자격기준</th></tr><tr><td>검사권자</td><td>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</td></tr><tr><td>검사 요건</td><td>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td></tr><tr><td>출입·검사 사항</td><td>·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
·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·시험기구·장부·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
·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</td></tr><tr><td>위반 시</td><td>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</td></tr></table></td><td>⑤ 탱크시험자에 대한 출입·검사 등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규정내용</th></tr><tr><td>검사권자</td><td>시·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</td></tr><tr><td>~~검사 요건~~</td><td>~~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~~</td></tr><tr><td>출입·검사 사항</td><td>·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
·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·시험기구·장부·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
·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</td></tr><tr><td>위반 시</td><td>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표 이론 오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87~87p
(2)
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</td><td rowspan="2">개념,공식-설명</td><td>(2) 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
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도로경계선</th><th>도로경계선</th><th>고정주유설비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자동차등의점검·정비를 행하는 설비</td><td>4m이상</td><td>2m이상</td><td>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</td><td>증기세차기를 설치한경우</td><td>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것</td><td></td><td>·불연재료의 높이 1m이상의 담을 설치
담은 고정주유설비 4m이상</td></tr><tr><td>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경우</td><td>4m이상</td><td>2m이상</td><td></td></tr></table></td><td>(2) 간이정비작업장 등의 설치기준
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불연재료의담</th><th>도로경계선</th><th>고정주유설비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자동차등의점검·정비를 행하는 설비</td><td></td><td>2m이상</td><td>4m이상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자동차등 세정을 행하는 설비</td><td>증기세차기를 설치한경우</td><td>높이 1m이상 설치</td><td></td><td>·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할것
담은 고정주유설비 4m이상</td></tr><tr><td>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경우</td><td></td><td>2m이상</td><td>4m이상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표 이론 오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143~143p
번호 : 10</td><td rowspan="2">문제-본문</td><td>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옥외저장탱크와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주하중과 종하중의 구분에 있어서 종하중에 해당하는 것은?</td><td>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와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주하중과 종하중의 구분에 있어서 종하중에 해당하는 것은?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문제 오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144~144p
번호 : 15</td><td rowspan="2">문제-문항</td><td>15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①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, 제4석유류,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해야 한다(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경우임).
②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해야 한다.
③ 이동저장탱크에는 해당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, 품명,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.
④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비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.</td><td>15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20년 소방위
①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, 제4석유류,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를 초과하여 쌓지 아니해야 한다(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외의 경우임).
②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해야 한다.
③ 이동저장탱크에는 해당 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, 품명,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.
④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.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문제 오류</td></tr>
</table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51~151p 번호 : 13	문제-문항	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① 제조소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 ③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,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. ④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제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.	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작성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① 제조소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에서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 ③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,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. ④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.
		수정 사유	문제 오류
155~155p 번호 : 04	문제-본문	04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한 동식물유류에 관한 내용이다.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는?	04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한 **동식물유류 등에** 관한 내용이다.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는?
		수정 사유	문제 오류
166~166p 번호 : 20	문제-본문	20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?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②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③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. ④ 전용사무실은 $33m^2$ 이상이어야 한다.	20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? 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기술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② 기술인력은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**1인 이상 등 4인** ③ 시설로는 전용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. ④ 전용사무실은 $33m^2$ 이상이어야 한다.
		수정 사유	문제 오류
171~171p 번호 : 14	문제-본문	14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소화전 1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량을 얼마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가? (단, 위험물 제조소는 단층 건축물이다) ① $5.4m^3$ ② $10.5m^3$ ③ $21.3m^3$ ④ $29.1m^3$	14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소화전 1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량을 얼마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가? (단, 위험물 제조소는 단층 건축물이다) ① $5.4m^3$ ② $10.5m^3$ ③ **34.8m3** ④ $29.1m^3$
		수정 사유	문제 오류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82~182p 번호 : 10	문제-본문	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·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? ①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(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) ②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③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④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	1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·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? ①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(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) ②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③ 펌프설비 또는 1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④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
		수정 사유	문제 오류
186~186p 최종모의고사	문제-문항	2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? ①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폭발력이 위로 방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가연성 증기 발생방지를 위하여 천장을 설치해야 한다. ② "제조소"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. ③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㎡ 이하로 해야 한다. ④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불연재료로 하고 바닥면적이 2.5㎡ 이하일 것	2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? ①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폭발력이 위로 방출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가연성 증기 발생방지를 위하여 천장을 설치해야 한다. ② "제조소"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 · 도지사의 위험물 제조소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. ③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㎡ 이하로 해야 한다. ④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불연재료로 하고 바닥면적이 2.5㎡ 이하일 것
		수정 사유	문항 오류
188~188p 빨간키	문제-문항	06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① 벽 · 기둥 · 바닥 · 보 · 서까래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. ②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③ "화기엄금"을 표시하는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. ④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공지의 너비가 5m 이상이어야 한다.	06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·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 ① 벽 · 기둥 · 바닥 · 보 · 서까래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. ② 제조소의 표지판은 한 변이 30㎝, 다른 한 변이 60㎝ 이상의 크기로 한다. ③ "화기엄금"을 표시하는 게시판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. ④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공지의 너비가 5m 이상이어야 한다.
		수정 사유	문항 오류
221~221p 최종모의고사	문제-문항	06 다음 위험물 품명 중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? ① 브로민산염류 ② 아조화합물 ③ 금속의 수소화물 ④ 질 산	06 다음 위험물 품명 중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? ① 브로민산염류 ② 황화인 ③ 금속의 수소화물 ④ 질 산
		수정 사유	문항 오류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23~223p	문제-문항	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① 흡연장소에는 보유공지를 두고 흡연장소 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. ② 흡연장소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③ 수동식소화기, 마른 모래 또는 소화수 등을 비치하는 등 흡연장소 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④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일 것	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① 흡연장소에는 보유공지를 두고 흡연장소 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. ②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③ 소형수동식소화기(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)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④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( )로 해야 한다.
		수정 사유	문제 오류
239~239p 최종모의고사	문제-문항	20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① 학교 · 주택 · 문화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상수 P값은 0.15이다.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③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에는 60분+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. ④ H pD^2+a 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가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고 대상에 따른 소화설비를 보강해야 한다. 21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셀프용 고정급유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① 급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②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,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,000리터 이하,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. ④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, 이 경유 급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리터 이하, 4분 이하로 하고, 경유는 600리터 이하로 하며, 급유시간의 상한은 12분 이하로 한다.	20 제조소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① 학교 · 주택 · 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상수 P값은 0.15이다.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③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에는 60분+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한다. ④ H pD^2+a 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가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고 대상에 따른 소화설비를 보강해야 한다. 21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셀프용 고정급유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① 급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②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,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**100리터** 이하,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. ④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, 이 경유 급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리터 이하, 4분 이하로 하고, 경유는 600리터 이하로 하며, 급유시간의 상한은 12분 이하로 한다.
		수정 사유	문항 오류
262~262p 번호 : 06	문제-본문	06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할 경보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내저장소의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 ① 저장창고의 연면적 150m2 초과하는 것 ②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것 ③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의 것 ④ 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	06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할 경보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옥내저장소의 규모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? ① 저장창고의 연면적 150m2 초과하는 것 ②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것 ③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의 단층건물의 것 ④ **복합용도** 건축물의 옥내저장소
		수정 사유	문제 오류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70~270p 최종모의고사	문제-문항	1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? (단,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의 경우는 제외한다) ①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 ② 고속국도의 길어깨 ③ 산림 또는 평야 ④ 지하 또는 해저	1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? (단,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의 경우는 제외한다) ①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 ② 고속국도의 갓길 ③ 산림 또는 평야 ④ 지하 또는 해저
		수정 사유	문항 오류
271~271p 번호 : 14	문제-본문	14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? ① 안전거리는 기념물 및 보물에 있어서는 50m 이상 두어야 한다. ② 보유공지의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때는 5m 이상 보유해야 한다. ③ 옥외설비의 바닥의 둘레는 높이 0.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. ④ 배출설비의 1시간당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$1m^2$당 $16m^3$ 이상으로 할 수 있다.	14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? ① 안전거리는 **지정문화 유산 및 천연기념물**에 있어서는 50m 이상 두어야 한다. ② 보유공지의 너비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일 때는 5m 이상 보유해야 한다. ③ 옥외설비의 바닥의 둘레는 높이 0.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. ④ 배출설비의 1시간당 배출능력은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$1m^2$당 $16m^3$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		수정 사유	문제 오류
273~273p 최종모의고사	문제-문항	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 ①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③ 설립하려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등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. ④ 회의 정관에는 회원의 가입 · 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.	2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 ①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②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③ 설립하려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등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.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		수정 사유	문항 오류
282~282p 최종모의고사	문제-문항	0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에 대상으로 옳은 것은? ① 이송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③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할 제조소등 ④ 암반탱크저장소	0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에 대상으로 옳은 것은? ① 이송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③ 지정수량 **150**배 이상인 옥내저장소 ④ 암반탱크저장소
		수정 사유	문항 오류

<table>
<tr><th>위치</th><th>오류유형</th><th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286~286p
번호 : 18</td><td rowspan="2">문제-본문</td><td>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?
① 저장·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
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
③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
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</td><td>1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?
① 위험물의 저장·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
②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
③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
④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문제 오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335~335p
번호 : 14</td><td rowspan="2">해설</td><td>14 수 원 ·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= N(최대 5개) × 7.8m3(260L/min × 30min) ·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= N(최대 4개) × 13.5m^3(450L/min × 30min)
∴ 수원 = 옥내 + 옥외 = (1개 × 7.8m^3) + (1개 × 13.5m^3) = 21.3m^3</td><td>14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(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,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각 부분(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)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.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.
따라서 수원의 양
•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= N(최대 5개) × 7.8m^3 (260L/min × 30min)
•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= N(최대 4개) × 13.5m^3 (450L/min × 30min): 1개일때는 2개를 설치
∴ 수원 = 옥내 + 옥외 = (1개 × 7.8m^3) + (2개 × 13.5m^3) = 34.8m^3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해설 오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336~336p
번호 : 23</td><td rowspan="2">해설</td><td>23 저장 · 취급 위험물의 주의사항
<table>
<tr><th>품 명</th><th>황화인</th><th>과산화나트륨</th><th>알킬알루미늄</th><th>나이트로글리셀린</th></tr>
<tr><td>유 별</td><td>제2류</td><td>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</td><td>제3류</td><td>제5류</td></tr>
<tr><td>주의사항</td><td>화기주의</td><td>물기엄금</td><td>물기엄금</td><td>화기엄금</td></tr>
</table></td><td>23 저장 · 취급 위험물의 주의사항
<table>
<tr><th>품 명</th><th>황화인</th><th>과산화나트륨</th><th>알킬알루미늄</th><th>나이트로글리셀린</th></tr>
<tr><td>유 별</td><td>제2류</td><td>제1류 알칼리 과산화물</td><td>제3류</td><td>제5류</td></tr>
<tr><td>주의사항</td><td>화기주의</td><td>물기엄금</td><td>물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</td><td>화기엄금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해설 오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375~375p
정답 및 해설</td><td rowspan="2">해설</td><td>06 위험물 및 지정수량
<table>
<tr><td>종 류</td><td>브로민산염류</td><td>아황화인</td><td>금속의 수소화물</td><td>질 산</td></tr>
<tr><td>유 별</td><td>제1류 위험물</td><td>제2류 위험물</td><td>제3류 위험물</td><td>제6류 위험물</td></tr>
<tr><td>지정수량</td><td>300킬로그램</td><td>100킬로그램</td><td>300킬로그램</td><td>300킬로그램</td></tr>
</table></td><td>06 위험물 및 지정수량
<table>
<tr><td>종 류</td><td>브로민산염류</td><td>황화인</td><td>금속의 수소화물</td><td>질 산</td></tr>
<tr><td>유 별</td><td>제1류 위험물</td><td>제2류 위험물</td><td>제3류 위험물</td><td>제6류 위험물</td></tr>
<tr><td>지정수량</td><td>300킬로그램</td><td>100킬로그램</td><td>300킬로그램</td><td>300킬로그램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수정 사유</td><td>해설 수정</td></tr>
</table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376~376p 정답 및 해설	해설	13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(시행령 제18조의2) 제조소등의 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기준 ·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일 것 • 흡연장소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• 수동식소화기, 마른 모래 또는 소화수 등을 비치하는 등 흡연장소 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	13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(영 제18조의2)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. 1.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( )로 하되,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. 소형수동식소화기(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)를 1개 이상 비치할 것
		수정 사유	해설 수정
415~415p 정답 및 해설	해설	20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• 설립하려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등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	20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• 설립하려면 제조소등의 관계인 등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 •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		수정 사유	해설 수정
417~417p 정답 및 해설	해설	03 이동탱크저장소 원거리 운행 시 상치장소 •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•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•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• 주차장 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•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• 도로(길어깨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)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• 벽 · 기둥 · 바닥 · 보 ·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하구조의 격벽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	03 이동탱크저장소 원거리 운행 시 상치장소 •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•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•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• 주차장 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상치장소 규정에 적합한 장소 •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• 도로(갓길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)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장소 • 벽 · 기둥 · 바닥 · 보 ·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격벽 등으로 해당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
		수정 사유	해설 오류
435~435p 정답 및 해설	해설	12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$D = 51.1\sqrt[4]{N}$ 여기서, N : 지정수량의 배수(하이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 : 100킬로그램) D : 거리(m) ∴ 안전거리 : $D = 51.1\sqrt[4]{2} = 51.1 \times 1 = 51.1m$	12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$D = 51.1\sqrt[4]{N}$ 여기서, N : 지정수량의 배수(하이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 : 100킬로그램) D : 거리(m) ∴ 안전거리 : $D = 51.1\sqrt[4]{1} = 51.1 \times 1 = 51.1m$
		수정 사유	해설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